

## 2025 한권으로 끝내는 사회보험법 정오표(2025.02.19. 기준)

| 페이지   | 수정 전  | 수정 후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|        |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|  |      |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|--------|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|--|------|-----------|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44  | [적용제외사업]<br>① 농업·임업·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 | [적용제외사업]<br>① <b>농업·임업·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</b>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|        |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|  |      |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44<br>날개  | 01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물품판매업은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이다. (x)<br>▶ 농업·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 | <b>01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물품판매업은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이다. (x)<br/>→ 농업·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</b>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|        |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|  |      |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60  | 4.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(법 제23조)<br>(2)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(령 제25조)<br>(3)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(령 제25조의2)  | 4.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(법 제23조)<br><b>(2)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(령 제28조의4)</b><br><b>(3) 고령자 고용지원금(령 제28조의5)</b>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|        |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|  |      |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62  | 6.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| <b>전체내용 수정(본문개정1 파일 참고)</b>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|        |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|  |      |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66 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구분</th> <th>지원대상</th> <th colspan="2">지원수준 상향조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운영비용</td> <td>중 일부</td> <td>사업주가<br/>단독 or 공동</td> <td>1. 선지원대상<br/>기업의 사업주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분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대상  | 지원수준 상향조건 |  | 운영비용   | 중 일부      | 사업주가<br>단독 or 공동  | 1. 선지원대상<br>기업의 사업주 | 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구분</th> <th>지원대상</th> <th colspan="2">지원수준 상향조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운영비용</td> <td>중 일부</td> <td>사업주가<br/>단독 or 공동</td> <td><b>1. 우선지원대상<br/>기업의 사업주</b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분 |  | 지원대상 | 지원수준 상향조건 |  | 운영비용 | 중 일부 | 사업주가<br>단독 or 공동 | <b>1. 우선지원대상<br/>기업의 사업주</b> |  |
| 구분  |   | 지원대상   | 지원수준 상향조건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|        |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|  |      |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운영비용  | 중 일부  | 사업주가<br>단독 or 공동   | 1. 선지원대상<br>기업의 사업주          |   |           |  |        |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|  |      |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구분  |   | 지원대상   | 지원수준 상향조건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|        |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|  |      |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운영비용  | 중 일부  | 사업주가<br>단독 or 공동   | <b>1. 우선지원대상<br/>기업의 사업주</b> |   |           |  |        |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|  |      |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67 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지원대상훈련</th> <th>지원금(지원수준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⑤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...<br/>가. 우선지원 대상기업.... 20시간 이상 시하는 훈련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 | 지원대상훈련   | 지원금(지원수준)                    | ⑤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...<br>가. 우선지원 대상기업.... 20시간 이상 시하는 훈련 |          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지원대상훈련</th> <th>지원금(지원수준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⑤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...<br/>가. 우선지원 대상기업.... 20시간 이상 <b>실시하는</b> 훈련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지원대상훈련 | 지원금(지원수준) | ⑤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...<br>가. 우선지원 대상기업.... 20시간 이상 <b>실시하는</b> 훈련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|  |      |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지원대상훈련  | 지원금(지원수준)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|        |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|  |      |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⑤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...<br>가. 우선지원 대상기업.... 20시간 이상 시하는 훈련         |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|        |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|  |      |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지원대상훈련  | 지원금(지원수준)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|        |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|  |      |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⑤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...<br>가. 우선지원 대상기업.... 20시간 이상 <b>실시하는</b> 훈련 |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|        |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|  |      |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71  | 4.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(법 제32조)  | 4.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(법 <b>제33조</b> )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|        |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|  |      |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72  | 5.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(법 제32조)  | 5.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(법 <b>제34조</b> )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|        |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|  |      |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83  | (2) 급여기초일액의 보장<br>③ 최저기초일액 : 산정된 기초일액이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(“최저기초일액”)보다 낮은 경우.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(법 제45조 제4항).  | (2) 급여기초일액의 보장<br>③ 최저기초일액 : <b>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(이하 “최저기초일액”이라 한다)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</b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|        |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|  |      |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
| 페이지        | 수정 전   |        |        | 수정 후   |        |       |  |  |  |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  |  |  |  |  |  |
|------------|--|--------|--------|--|--------|-------|--|--|--|---|--------|---|----|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---|--|--|--|--|--|
|            | 종 류  | 요 건    | 지 급 액  | 종 류  | 요 건    | 지 급 액 |  |  |  |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  |  |  |  |  |  |
| 85         | <table border="1"> <tr><td>훈련연장급여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개발연장급여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/table>                      | 훈련연장급여 |        |  | 개발연장급여 |       |  |  |  | <table border="1"> <tr><td>훈련연장급여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개발연장급여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/table> | 훈련연장급여 |   |    | 개발연장급여 |    |        |            |  |  |  |  |  |
| 훈련연장급여     |  |        |        |  |        |       |  |  |  |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  |  |  |  |  |  |
| 개발연장급여     |  |        |        |  |        |       |  |  |  |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  |  |  |  |  |  |
| 훈련연장급여     |  |        |        |  |        |       |  |  |  |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  |  |  |  |  |  |
| 개발연장급여     |  |        |        |  |        |       |  |  |  |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  |  |  |  |  |  |
| 97         | 제5절 육아휴직급여 등<br>I 육아휴직급여 등   |        |        | 전체내용 수정(본문개정2 파일 참고)   |        |       |  |  |  |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  |  |  |  |  |  |
| 115        | 12.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..   |        |        | 12.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<b>늘찬배달원</b> 으로서 퀵서비스업자..   |        |       |  |  |  |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  |  |  |  |  |  |
| 139        | II 용어의 정의(법 제5조)<br>④ 치유 :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98 기대할 수..  |        |        | II 용어의 정의(법 제5조)<br>④ 치유 :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<b>98</b> 기대할 수..  |        |       |  |  |  |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  |  |  |  |  |  |
| 142        | V 보험의 관장 및 운영에 이어<br>VI.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(법 제9조의2) 내용 추가  |        |        | VI.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(법 제9조의2)<br>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,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.<br>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, 산업재해예방교육,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|        |       |  |  |  |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  |  |  |  |  |  |
| 161        | 6. 요양급여 범위 확인(법 제41조의 2)<br>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양급여의 범위에서...  |        |        | 6. 요양급여 범위 확인(법 제41조의 2)<br>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<b>요양급여</b> 의 범위에서...   |        |       |  |  |  |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  |  |  |  |  |  |
| 161        | (3) 의료기관 변경요양(법 제48조)<br>공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를 옮겨 요양하게 할 수 있다..  |        |        | (3) 의료기관 변경요양(법 제48조)<br>공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<b>해당하면</b> 근로자를 옮겨 요양하게 할 수 있다..   |        |       |  |  |  |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  |  |  |  |  |  |
| 163        | (1) 부분휴업급여의 지급<br>※ (평균임금 - 취업임금) × 80% ,<br>※ 단,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일 경우 → (최저임금 - 취업임금) × 80%   |        |        | (1) 부분휴업급여의 지급<br>※ (평균임금 - 취업임금) × 80% ,<br>※ 단, <b>휴업급여지급액</b> 이 최저임금일 경우 → (최저임금 - 취업임금) × 80%  |        |       |  |  |  |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  |  |  |  |  |  |
| 191        | <table border="1"> <tr><td>구분</td><td>일반</td><td>진폐</td><td>건강손상자녀</td></tr> <tr><td>장의비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/table> | 구분     | 일반     | 진폐   | 건강손상자녀 | 장의비   |  |  |  |   |        | <table border="1"> <tr><td>구분</td><td>일반</td><td>진폐</td><td>건강손상자녀</td></tr> <tr><td><b>장례비</b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/table> | 구분 | 일반     | 진폐 | 건강손상자녀 | <b>장례비</b> |  |  |  |  |  |
| 구분         | 일반   | 진폐     | 건강손상자녀 |  |        |       |  |  |  |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  |  |  |  |  |  |
| 장의비        |  |        |        |  |        |       |  |  |  |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  |  |  |  |  |  |
| 구분         | 일반   | 진폐     | 건강손상자녀 |  |        |       |  |  |  |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  |  |  |  |  |  |
| <b>장례비</b> |  |        |        |  |        |       |  |  |  |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  |  |  |  |  |  |

| 페이지       | 수정 전   | 수정 후  |
|-----------|--|---|
| 202<br>날개 | 19) 업무상질병은 해당 없음   | <b>19) 업무상질병은 해당 없음</b>   |
| 232       | 3.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(법 제53조의2)   | 3.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(법 <b>제63조의2</b> )  |
| 276<br>날개 | 05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은 직장가입자가 된다. (×)<br>▶ 무관후보생은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니다.  | 05 병역법에 따른 <b>군간부후보생</b> 은 직장가입자가 된다. (×)<br>▶ <b>군간부후보생</b> 은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81       | ④ 회의<br>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기획회의는 매년 2회...  | ④ 회의<br>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<b>정기회의</b> 는 매년 2회...   |
| 294       | 3. 수급권의 보호(법 제58조)   | 3. 수급권의 보호(법 <b>제59조</b> )  |
| 300       | (2) 보험료 납부의무와 연대책임<br>2. 소득월액보험료 : 직장가입자   | (2) 보험료 납부의무와 연대책임<br>2. <b>보수의 소득월액보험료</b> : 직장가입자   |
| 345       | Tip 박스<br>2.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: 보험관계 성립일부<br>터 9월 30일까지1. 해당 보험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 | Tip 박스<br>2.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: 보험관계 성립일부<br>터 9월 30일까지1. <b>해당 보험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</b> |